

영등포구의회  
제175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 
관한 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3. 6. 4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 檢 討 報 告

## 1. 경 과

의안 제210호로 2013년 5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 
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소외, 고독감, 노인학대 등 사회적으로  
발생하고 있는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복지를 증진  
하기 위하여 노인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 
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명칭, 설치에 관하여 규정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상담센터의 기능, 인력을 명시(안 제3조, 안 제5조)
- 다. 상담센터의 운영, 수탁자의 의무 규정(안 제8조, 안 제9조)
- 라. 상담센터 운영 등에 따른 지도·감독(안 제10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,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2013년 82,570천원 예산편성

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상담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족갈등, 우울증, 학대 등 노인들의 문제를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함.
- 주요내용을 보면  
노인상담센터의 설치목적과 수행하는 기능, 인력, 자원봉사자 활용, 운영방법 및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.
-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2년에 발표한 '2011 노인 실태조사'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가구형태에서 노인 단독가구가 68.1%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,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27.3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또한 노인의 88.5%가 만성질환자로 고혈압 54.8%, 우울증상 29.2%로 조사되어 특히 여성, 고 연령, 저소득일수록 우울증상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.

노인의 빈곤율은 76.6%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 25%의 세 배에 이르고, 노인 중 11.2%는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음.

- 위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볼 때 노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와 노인문제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며, 센터가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향후 센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담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- 참고로 우리 구는 2011. 5. 12 서울시 최초로 「영등포구 노인 상담센터」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, 이와 관련 타 자치단체에 대하여 수범 상담사례 홍보 등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고 민간후원금의 확대 발굴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.

# 관 련 법 령

## ■ 노인복지법

**제7조(노인복지상담원)** ①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.

<개정 2007.8.3>

②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,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1999.2.8>

## ■ 노인복지법 시행령

**제12조(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)**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상담원(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"상담원"이라 한다)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05.12.27, 2007.12.13, 2011.12.8>

② 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3조에 따른 장애

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1999.12.31, 2002.3.9, 2005.12.27, 2007.10.15, 2012.8.3>

**제13조(상담원의 직무)**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.

1.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
2.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
3.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
4.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
5.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
**제14조(상담원의 보수)** 상담원(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 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(직무수당·기말수당·정근수당 및 기타 수당을 포함한다)를 지급한다.